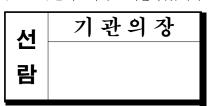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702호 2021. 9. 27.(월)

조 례

남해군	소데	세2556오	남해간	린내상 소례 일부개성소례	1
남해군	조례	제2557호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	4
남해군	조례	제2558호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ç
남해군	조례	제2559호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	15
남해군	조례	제2560호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남해군	조례	제2561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남해군	조례	제2562호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8
남해군	조례	제2563호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67
남해군	조례	제2564호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75
남해군	조례	제2565호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81
고		시			
남해군	고시	_ 제2021-	14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87

회 람					
, д					

남해군 고시 제2021-14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88 남해군 고시 제2021-150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89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성과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556호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9월 2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한 공로한"을 "공헌한"으로, "시상하는 남해군민 대상 수상에 관한"을 "남해군민 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회봉사·효행
- 2. 산업경제
- 3. 교육·체육
- 4. 관광·문화예술
- 5. 환경 · 보건
- ② 군민대상은 부문별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중 "수상대상자는 군민대상 심사위원회"를 "수상자는 군민대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군민대상 심사위원회)"를 "(군민대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선정"을 "선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본 위원회는"을 "위원회의 위원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대리 수상) 군민대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수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57호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9월 2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남해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성별영향평가" 란 남해군수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성인지 예산서" 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성별영향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한다.
 -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 2. 법령 및 조례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3. 남해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 · 관리에 관한 경우
-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세출예산안의 남해 군의회 제출 전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평가대상의 목적 및 개요
- 2. 평가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 1.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부서장과 예산업무 부서장이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⑤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 부서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 1. 평가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하 사항
 - 4.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 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2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평가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58호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9월 2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친화도시" 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 2. "양성평등" 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해군민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과 양성평등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및 평가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 3. 주요 정책과제 및 사업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해당 연도의 추진사업계획
- 2. 해당 연도 추진사업의 일정
- 3.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 간의 협조 사항
- 4. 해당 연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확보 방안
- 5. 그 밖에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모든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등) 군수는 여성친화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사기진 작을 위한 포상을 하여 군민이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제9조(조성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 2. 여성의 경제 · 사회적 평등 실현
-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주요 정책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군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에 관련된 사업 추진 시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각 목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도시기반 및 교통관련 시설: 도로·교통·공원·녹지·하천·하수도 등
 - 가. 보행편의와 안전성
 - 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
 -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 라. 일 · 가정 양립 환경 조성
 - 마.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 2. 공공이용시설: 학교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사회복지시설 등
 - 가. 여성, 임산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내외 적인 소통구조의 연결
 - 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 3.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 공동체 프로그램 · 마을 만들기 등
 - 가. 다양한 가족(대가족, 1인 가족, 학생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을 고려 한 거주 공간의 확보
 -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확보

제14조(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 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과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16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군민 개인의 역량증진과 가족·마을 · 행

정의 협력 구조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가 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군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지역특화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남해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제20조제2항에 따라 기능을 대행하는 남해군 양성평등위원회를 말한다), 군민참여단 등의 의견을 들어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각종 돌봄사업 및 문화욕구 충족 사업
 - 2. 주민 재능 교육사업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 제20조(설치 및 기능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등은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남해군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

제21조(군민참여단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남해군 여성친화도시조성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을 둔다.

제22조(기능) ①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과 정책 제안
- 2. 생활불편 사항 발굴 및 개선의견 제시
-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모니터링
-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교육 참여

-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
-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책추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구성) ① 군민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50명 이내의 군민으로 구성하며, 군 민참여단원(이하 "단원" 이라 한다)은 군수가 위촉한다.
 - ② 군민참여단은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문분야의 군민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4조(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2.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단원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5조(운영)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을 운영한다.
 -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군민참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반을 구성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군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26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단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59호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9월 2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과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작은 학교" 란 남해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 2. "임대주택"이란 남해군수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를 목적으로 조성한 주택을 말한다.
- 3. "부대시설" 이란 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작은학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작은 학교에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
 - 2.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관계 행정기관·각급 학교·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것
-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작은학교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임대주택 입주자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작은학교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 2. 작은 학교 현황 및 발생추이
 - 3. 작은학교사업의 추진 및 지원
 -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남해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작은 학교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작은학교사업 등) ① 군수가 추진하는 작은학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대주택·부대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 2. 학생유치사업
- 3.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정착 지원
-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지역실정과 주택 수요의 적합성
- 2.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과 환경
- 3. 임대주택 운영의 지속성
- 4. 남해군민의 인식 및 협조
- 제7조(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세대가 군으로 전입하고 해당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하는 세대로 한다.
- 제8조(입주 신청 및 입주자 선정) ①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입주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 신청,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 선정 통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임대차계약 체결 등) ①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와 별지 제2 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마다 그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제10조(임대료 등) 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등" 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② 군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등을 감액할 수 있다.
 - 1.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자녀가 2명 이하인 세대: 100분의 50
 - 2.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100분의 65
 - ③ 그 밖에 임대료 등의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입주자의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행위
 - 2.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그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 도로 사용하는 행위
 - 3.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 4. 그 밖에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7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소멸된 경우
 - 2.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그 밖에 임대차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③ 군수는 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 임대료 등을 반환한다. 다만, 군수가 입주자로 부터 받아야 할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 제13조(입주자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입주자의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입주자격이 나 입주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입주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입주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작은학교사업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 작은학교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 2. 작은학교사업 추진 및 지원
 - 3. 실무협의회의 운영

- 4. 작은학교사업 관계기관 및 작은 학교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 5.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작은학교사업 담당 부서장
 - 2. 남해교육지원청 작은학교사업 담당 부서장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2. 행정기관, 학교, 민간단체 구성원으로서 작은학교사업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작은학교사업 관련 전문가
 - 4. 작은 학교가 소재하는 읍 또는 면에 거주하는 군민
 - 5.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① 작은학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실무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1조(간사 등)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학교사 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22조(위탁 등) 군수는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벽지	제 1	호서식	1
1 2 71		エンバー	- 1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제8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현 주 소				
연 락 처				
가구원수	Ц	※초등학생:	명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확인 및 관리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연락처, 가족관계, 재산 세 납입 증명서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입주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표준임대차 계약서

아래 표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인 남해군수와 임차인 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1. 계약자
- 가. 임대인
- 1) 이름:

(인)

- 2) 주소:
- 3) 사업자등록번호:
- 나. 임차인
- 1) 이름: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 3) 주민등록번호:
- 2. 계약**일**: 년 월 일
- 3. 공공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	아파트[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그 밖의 주택[]							
						면 적(m²)			
공공임대주택	방의	규모별	전용 면적		공 용 면 적				
면 적	수			주거공용 면 ^조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 적을 포함한다) 합계			
공공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 · 복리시설의 종류									
담 보 물 권 설 정 여 부	없음[]			_ [_ /	음[]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임차인 자격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1조제5항에 따른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제2쪽)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이하 "공공임대주 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 게 임대한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금 액		
임대차 계약기간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급	⊒. ⊒
중도금	금	원정은 .	.에 지급
잔 금	금	원정은 .	.이전에 지급

- ③ "임차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해야 하며, 제2항의 지급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④ "임차인"은 그달 분 임대료를 임대인이 지정한 기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① 월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월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 ② 입주 월의 월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 제4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그 밖의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 2.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 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5조("임차인"의 금지행위)

- 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 ②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제3쪽)

- ③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 ④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6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관리해야 한다.
 - ② "임차인"은 제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임차인"을 포함하여 위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공공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사람이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관리한다.
- 제8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3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임차인"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해야 한다.
- **제9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2.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3.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 4.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5.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6.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 7.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 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8.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 9.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 1. "임대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2.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 키 경우
 - 3.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 4. "임대인"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쪽)

- 제10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① "임차인"이 제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통보(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변경 후 계약 해지 예정일이 60일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계약 해지 예정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후속 임차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입주일 하루 전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明渡)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임대인"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야 할 월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납부금액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3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주택 인도 지연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임차인"은 위 주택을 "임대인"에게 넘겨줄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급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시 또는 예치해야 한다.
- 제12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제13조(특약) "임대인"과 "임차인"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제12조 관련)

입 주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입주년월일	년 월 일
퇴거예정일	년 월 일
해 지 사 유	

위와 같이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입주자 관리카드(제13조 관련)

		н ,	, –	471—(/11111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계약자	직		업			
(세대주)	주		소			
		자	택			
	연락처	휴 대	전 화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장	비고
가 족						
사항						
입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특이사항	>					

남해군 조례 제2560호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9월 2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 수수료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61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9월 2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제1항 관련)

1. 증명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사실확인	1통	1,000	
(2) 무적자사실확인	1통	1,000	
(3) 독자사실확인	1통	1,000	
(4) 부재자사실확인	1통	1,000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소유사실확인	1통	1,000	
(2) 원자재소요량 사실확인	1통	3,000	
(3) 가축자가사육 확인	1통	1,000	
(4) 관상수목자가생산 확인	1통	5,000	
(5) 리장재직사실확인	1통	1,000	
(6) 경작사실확인	1통	1,000	
(7) 보세건물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	1,000	
(8) 실수요자 사실확인	1통	1,000	
(9) 조림실적확인	1통	1,000	
(10) 식품제조보고사실확인	1통	1,000	
(11) 폐선해체확인	1통	1,000	
(12)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	1통	1,000	
(13) 거주사실확인	1통	1,000	
(14) 호(제)적멸실확인	1통	1,000	
(15)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	1통	600	
(16) (식품공중) 영업허가, (휴폐업등)사실증명	1통	500	

(17) 의료기관 약국(휴·폐업등)사실증명	1통	1,000	
3.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건축선 측량	1필지	5,000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1필지	300	
측량 도면의 재교부			
(3) 환지(예정지지정) 증명	1필지	400	
(4)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300	
(5)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300	
(6)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300	
(7)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300	
(8) 토지대금 완납증명	1필지	300	
4. 회계에 관한 사항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1,0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1,000	
(3) 원천징수공제 증명	1통	1,000	
(4) 물품납부 실적증명	1통	1,000	
(5) 공시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확인원	1통	1,000	
(6) 보상금 지불증명	1통	1,000	
(7)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1,000	
5.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증명	1통	1,000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서	1통	1,000	
6. 기타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1,000	
(2)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통	500	

(단위 : 원)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1. 일반행정관계			
(1)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속)신청	1건	3,000	
(2) 국·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	1건	5,000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500	
2. 농수산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 메	200	
(2)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신청	1건	500	
(3) 잠견매매주선업의 허가 신청	1건	1,000	
(4) 어획물 양육(전적)허가 신청	1건	1,000	
(5)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1건	4,200	
(6)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	
(7) 어업권(지분)이전 변경등록	1건	1,500	
(8)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	
(9) 유료낚시터, 체험어장 지정	1건	2,500	
(10)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	
(11) 어획물운반업 변경등록	1건	2,000	
(12)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	
(2) 전기보안담당자 대행 승인	1건	1,000	
(3)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1건	500	
(4) 청과시장 경매사 임명승인 신청	1건	1,000	
(5)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1건	100,000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건	500	

(2)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시의 용지비 공사비의 보상비 제외 1/1000
(3) 하천(공유수면)점용 (물량종가 명의) 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4)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
(5)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1,000
(6)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1건	1,000
(7) 소하천공사(소하천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	1건	1,000
(8)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신청	1건	500
(9) 공(시)영주택 (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
(10)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1건	1,000
(11)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
(12)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
(13)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 변경, 소유권 변경)	1건	500
(14)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15)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
(16) 전문건설업 면허갱신	1건	7,000
(17) 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18) 건설업 양도인가 신청	1건	10,000
(19) 법인 합병인가 신청	1건	10,000
(20) 건설업 상속인가 신청	1건	10,000
5.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1건	2,000
(2) 묘지개장 허가신청	1건	500
(3) 위생처리업		

• 위생처리업 신규 신고	1건	2,300
• 위생처리업 변경 신고	1건	1,200
(4)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규 신고	1건	2,300
•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신고	1건	1,200
(5) 기 타		
(3) ~ (4) 사항 중 영업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신고 수수료에 준함		
6. 문화예술 및 관광관계		
(1) 애니메이션업 신고	1건	20,000
(2)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1건	10,000
(3)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1건	5,000
7. 상수도관계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정시험수수료	1건	4,000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1건	2,000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수수료	신규1건	4,000
	갱신1건	2,000
(4)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40㎜미만	2,000
	급수관 구경40㎜이상	4,000
(5)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40㎜만	2,000
	급수관 구경40㎜이상	4,000
	급수관 구경40㎜미만	2,000
	급수관 구경40mm이상	4,000
	계량기 구경40mmP만	1,000
	계량기 구경40mm이상	2,000
	급수관 구경40㎜만	2,000
	급수관 구경40㎜이상	4,000
		,
(1)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1) 전시 프 크시 현고현영 세포기 	112	300

9. 정보통신관계		
(1) 공사의 사용전검사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건	20,000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건	30,000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건	40,000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1건	60,000
(2) 재검사수수료		
●공사의 사용전검사 수수료액의 50퍼센트		
10. 도로명주소 관계		
 (1)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신청	1건	해당연도 단가계약 금액
(2)도로명주소 대장 등본	1건	500
(3)도로명주소 대장 열람	1건	300
(4)인터넷에 의한 도로명주소 대장등본 발급:열람	1건	300
●등본사본 출력물 5면 초과 시 1면마다 50원 추가		

남해군 조례 제2562호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9월 2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 시설물"이란 관광객 유치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남해군이 설치·운영하는 공원, 캠핑장, 전시관, 체험관, 전망대, 휴 게쉼터, 주차장 등의 시설물과 이와 연관되는 시설물 및 부수설비로서 제3조에 따 른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문화·관광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문화·관 광 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 ① 시설물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한다.
 - 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소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입장 및 이용시간) ①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② 매표는 이용 개시시간 30분 전부터이며 입장은 이용 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입장료 및 이용료) ① 시설물을 입장(관람) 또는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입장(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7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가 주관하여 제작·판매하는 기념품이나 체험 프로그램의 참가비 등은 위탁받은 자가 자율로 정하다.
 - ③ 입장(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입장(관람) 및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입장(관람)권 및 이용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성인의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매표 당일에만 유효하다.

제7조(요금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입장(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 2.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 3. 65세 이상 노인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고엽제후유 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4.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1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16.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17.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 18. 그 밖에 군수가 입장(관람)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휴무일) ①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 2. 매주 월요일, 단 노도 문학의 섬 시설물은 매주 수요일(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무일로 한다)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0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 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허가)** 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허가(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도 문학의 섬 내 노도창작실의 이용허가(변경)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③ 이용허가(변경)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 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변경) 허가서를 처리 기간 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물의 이용허가는 공익에 부합할 때 신청순서에 따른다. 다만, 2명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 2.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한 행사
- 제12조(이용료 등) ① 제10조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서 군수가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탁시설물의 이용료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100분의 100
 - 2. 남해군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이용 중지된 경우: 100분의 100
 - 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100분의 50
- 제13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100분의 100
 - 2. 남해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100분의 100

-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50
- 제14조(이용자의 설비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15조(이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
 - 3. 허위 또는 허가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제16조(손해배상) 이용(관람)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관 광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8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 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2항의 확인·조사결과 시설물의 운영 및 사업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관리수탁자는 제3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관리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
 - 2.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3.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에 따른 확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 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 4.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관리위탁이 곤란한 경우
 -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물의 일부를 위탁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관리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④ 관리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21조(준용)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9조, 제10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사용·수익허가 및 이용허가,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 1.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
- 2. 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 3. 남해군 보물섬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 4. 남해군 남해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5. 남해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6.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 7.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플랫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8.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 9.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 10.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11.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문화·관광 시설물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시설명칭	관련 시설물	위 치	비고
힐링국민 여가캠핑장	데크, 화장실 등	남해군 이동면 성남로 79-14	
독일문화 체험센터	파독전시관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89-7	
원예예술촌	원예예술문화관과 그 부대시설	남해군 삼동면 예술길 39 일원	
이순신 순국공원	• 호국광장: 바다광장, 위령탑, 각서공원 등 • 관음포광장: 리더십체험관, 이순신 밥상체험관, 이순신 인물체험공원, 안내광장 등 • 통합시설: 이순신 영상관,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883번길 100	
보물섬캠핑장	펜션, 방갈로, 게스트하우스	남해군 남면 남면로 1229번길 10-34	
서상 게스트하우스	 1층: 게스트룸 2인실 1칸, 4인실 1칸, 12인실 1칸, 주방, 샤워실, 화장실, 탕비실, 기계·전기실 등 2층: 게스트룸 10인실 1칸, 12인실 1칸, 샤워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1687번길 14	
물미해안 전망대	카페테리아, 판매점, 옥상전망대, 화장실, 데크, 주차장 등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720	
설리 스카이워크	카페테리아, 스카이워크, 화장실, 데크, 주차장 등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303번길 176	
남해문화센터	작은영화관, 다목적홀, 강의실, 연습실, 사무실 등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12	
남해생활문화센터	연습실, 악기연습실, 다목적실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22	

시설명칭	관련 시설물	위 치	비고
노도 문학의 섬	김만중문학관,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등) 노도문화관, 노도창작실, 상징조형물, 야외공원	남해군 상주면 노도길 73-34 일원	
뮤지엄남해& 동창선아트스테이	작가창작실, 다목적실, 체험실,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캠핑장 등	남해군 창선면 연곡로 13	
바래길 작은미술관	전시실	남해군 남면 남면로1739번길 46-1	
보물섬 레일파크	기차조형물, 조경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2-1 일원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레인보우 전망대(한옥누각) 탐방로, 탐방로 연결데크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산34-20 일원	
남해각, 남해각 전망공원 보행로	연면적: 1,277㎡ (지하1층, 지상2층, 옥상)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운영사무국, 옥상 지원시설(공연장, 주차장) 엘리베이터 타워, 트리탑웨이(보행로)	남해군 설천면 남해대로 4216일원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443-16 일원	
스페이스 미조	연면적: 1,815㎡ 냉동창고 아카이브, 디자인스튜 디오, 다목적홀, 전시실, 운영사 무국, 예술가 기숙사		

[별표 2]

문화·관광 시설물 입장(관람)료(제6조 관련)

1. 입장(관람)

(단위:원)

구 부	구 분		개 인		
시설 명칭		일반	청소년 군 인	어린이	비고
파독전시관			1,000		
원예예술촌		5,000	3,000	1,500	
시스지 어지되	개인 (군민)	3,000 (2,000)	2,000 (1,500)	1,500 (1,000)	
이순신 영상관	단체 (군민)	2,000 (1,000)	1,000 (1,000)	800 (500)	
김만중문학관		무료	무료	무료	
뮤지엄남해&	전시실	2,000	1,500	1,000	
동창선아트스테이	물놀이장	5,000	5,000	5,000	
바래길 작은미술관		무료	무료	무료	

가. 기준 연령

• 일 반 : 만 18세 이상

·청소년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어린이 : 만 3세 이상 만 12세 미만 (단, 물놀이장의 경우 만 1세 이상 만 12세 미 만으로 한다)

나. 단체(20명 이상) 입장료는 개인 입장료의 80% 범위 이내로 한다.

다. 면제대상의 경우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

[별표 3]

문화·관광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1. 물미해안 전망대 이용료

가. 이용료

(단위:원)

구 분		대인	소인
이 사무리 사고를 가게	개 인	3,000	2,000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단 체	2,000	1,000

1) 소 인 :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

2) 대 인 : 만 19세 이상

3) 단 체 : 유료입장객 중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나. 운영시간 : 09:00 ~ 18:00

2. 설리 스카이워크 이용료

가. 이용료

(단위:원)

구 분	대인	소인	비고
스카이워크	2,000	1,000	
스카이워크 그네	6,000	4,000	스카이워크 포함

1) 소 인 : 만 7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사람

2) 대 인 : 만 19세 이상

나. 운영시간 : 09:00 ~ 21:00(스카이워크 그네는 18:00까지)

3.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단위 : 원)

.J. H	대학생 이하		일 반		비고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1 1 1	
게스트룸 2인실	19,000	15,000	20, 000	25,000		
및 4인실	12,000	15,000	20,000	25,000		
게스트룸 10인실	10, 000	12 000	17 000	10,000		
및 12인실	10,000	13,000	17,000	18,000		

- 성수기 : 7월~8월,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 1인 1박 기준
- 가족동반 만 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 1박은 당일 14:00∼익일 12:00까지

가. 이용료 반환기준

	내 용	반환기준	
게스트	 게스트하우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는 는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스트하우스 :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표	·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전일까 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 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료의 100분의 75
	어 에/[/[취소되었글 경구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료의 100분의 50

4. 캠핑장 이용료

가. 보물섬캠핑장

1) 이용료

(단위 : 원)

		刊	수 기		
시 설 별	이용기준	평 일 (일~목요일)	주말.공휴전일 (금,토,공휴전일)	성 수 기 (7~8월)	비고
펜션동	4인실 (34m²)	120,000	140,000	170,000	
펜션동	2인실 (20m²)	65,000	80,000	120,000	
방갈로	4인실 (17m²)	50,000	50,000	60,000	1일 기준
텐트사이트	1개소/1대당	35,000	35,000	35,000	
게스트하우스	6인실 (23m²)		1인 25,000		

※ 비수기 평일에 단체(20인 이상) 또는 장기체류자(2주 이상)는 시설이용 료의 30% 할인

단, 단체할인율 적용은 숙박시설 이용기준정원에 따름.

- ※ 숙박시설 이용료는 기준정원 초과시 1인당(중학생 이상) 5,000원 추가 징수
- ※ 1일 이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 요금 징수 (1시간까지 5,000원, 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초 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 1일치 추가)

2) 예약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이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10%배상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이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20%배상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이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3) 천재자변 또는 불기형력적인 사유에 의한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나. 힐링국민여가 캠핑장

1) 이용료

(단위 : 원)

1 11 14	או מ - ו ס	비수	7]	성 수 기(7	7~8월)	ul –
시 설 별	사용기준	주 말 (공휴일)	주 중	주 말	주 중	비고
텐트사이트	대형 6x8	30,000	25,000	40,000	35,000	1일
텐트사이트	중형 6x6	20,000	15,000	30,000	25,000	1일 기준

- ** 1일 사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1시간까지 5,000원, 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초과 4시간까지20,000원, 4시간이후 1일치 추가)
- ※ 텐트 사이트 1명(중학생 이상) 추가 시 1인당 10,000원의 추가요금 징수

2) 예약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이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10%배상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이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20%배상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이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별표 4]

문화·관광시설 이용료(제12조 관련)

1. 이순신 순국공원 리더십체험관 이용료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이용료 (4시간)	비고
	노량대원	1회	100,000원	
卫	전승관	1회	20,000원	1회 4시간기준
육	순국관	1회	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관	충무관	1회	20,000원	

※ 기본 이용시간 및 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1. 기본 이용시간 : 1회 4시간 기준

2. 이용시간 초과시 금액 산정방법

초과 이용시간	초과 이용금액	비고(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1시간 미만	노량대원 20,000원 교육관 4,000원	1회 이용료의 20%를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노량대원 40,000원 교육관 8,000원	1회 이용료의 40%를 가산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노량대원 60,000원 교육관 12,000원	1회 이용료의 60%를 가산
3시간 이상	노량대원 100,000원 교육관 20,000원	1회 이용료의 100%를 가산

2. 원예예술촌 이용료

(단위 : 원)

지설명 규모(종류) 기준 금 액 평일 토알-광휴일 다목적교육관 236.4m² 1회/3시간 60,000 72,000 · 초과사 세미나실 64.4m² " 30,000 36,000 -1시간다	비고
다목적교육관 236.4m² (108석) 1회/3시간 60,000 72,000 · 초과시	시간 추가요금 적용
(108석) 1외3시간 60,000 72,000 · 초과사	
	기반:
에 1(한시) 51.1m 20,000 24,000	로의 20% 추가 이상 2시간 미만 :
(공예) 49.7m² " 20,000 24,000 기본토	로의 50% 추가
화 (2등) 3(미술) 59.4m² " 20,000 24,000 ^{-2시간여}	
4(특산) 59.4m² " 20,000 24,000 단, 예약	로의 100% 추가 F자 있을 경우
상설교육장(2층) 302.4m² 1일 70,000 84,000	가사용불 가
옥 야외공연장 1회 30,000 36,000	
옥 의 시 의예거리 결혼 등 행사 1회/3시간 100,000 120,000 초과	1시간당 30,000

3. 남해문화센터 이용료

(단위 : 원)

그님	평일		토/일/공휴일		비고	
구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nl Tr	
다목적홀	100,000	120,000	120,000	150,000	1. 이용기준(3시간/1회) ● 주간: 09시~18시	
지하 연습실	30,000	40,000	40,000	60,000	• 야간: 18시~21시	

가. 이용가능시간: 09:00~21:00

나.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 이용시간	초과 이용금액	비고
1시간 미만	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이용 불가

※ 주간에서 야간으로 초과 이용하는 경우 야간 이용료 기준으로 가산

다. 유료입장 대관의 경우 입장료 수입금의 10%와 이용료 중 높은 금액

4. 남해생활문화센터 이용료

가. 강의실 (단위 : 원)

구분		시설면적 (m²)	주 간	야 간	비고
다목적실		77.6	7,000	10,000	
	1	41	3,000	4,500	
ol 스 시	2	21	1,000		1. 이용기준(1시간/1회) ● 주간: 09시~18시
연습실	3	21		1,000	1,500
	4	22			3. 악기, 음향기기 등 사용료 회당 1천원 가산
obal 여스 시	1	55	3,000	4,500	70100/10
악기연습실	2	25	1,000	1,500	

- 1) 이용가능시간: 09:00~21:00(공휴일/일요일의 경우 18:00까지 운영)
- 2)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1회 사용료의 100% 적용

나. 사물함 이용료

_ 1. 1 = E 1 0			
구 분	기 준	금액(원)	비고
사물함 (대)	1개월	10,000	
사물함 (중)	1개월	6,000	
사물함 (소)	1개월	3,000	

5. 노도문학의 섬 이용료

가. 노도창작실

시설이용기간	기준	금 액(원)	비고
30일 이상 ~ 40일 미만	1일	7,000	
40일 이상 ~ 50일 미만	1일	6,000	
50일 이상 ~ 60일 미만	1일	5,400	
60일 이상 ~ 90일 이내	1일	5,000	

나. 그 외 시설

구분	기준	금 액(원)	비고
김만중문학관 전시실(2층)	1일	120,000	1. 이용기준(3시간/1회)
노도문화관	1회	100,000	1. 10 / 12 (0 / 1/1/)
야외공원	1일	100,000	

다. 이용가능시간: 09:00~18:00(휴관일 이용불가)

라.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 이용시간	초과 이용금액	비고
1시간 미만	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사용 불가

6. 뮤지엄남해&동창선아트스테이 이용료

가. 캠핑장

(단위 : 원)

	비 성수기		비 성수기 성수기(7~8월) (물놀이장 운영기간)		
구분	주중 (일~목요일)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주중 (일~목요일)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비고
1박2일 (4인기준)	30,000	35,000	40,000	45,000	 종량제봉투(20ℓ) 1매 지급 카라반 및 캠핑용 차량 5,000원 추가

1) 이용가능 시간 : 14:00~ 익일 11:00

2)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 이용시간	초과 이용금액	비고
1시간 미만	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 시 1박2일 이용료 부과

나. 그 외 시설

구분	기준	금 액(원)	비고
전시실	1일	100,000	
체험실	1회	100,000	1. 이용기준(3시간/1회)
다목적실	1회	100,000	

1) 이용가능시간: 09:00~18:00(휴관일 이용 불가)

2)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 이용시간	초과 이용금액	비고
1시간 미만	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이용 불가

7. 스페이스 미조 대관(이용)료 및 반환기준 가. 대관(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용도	기준	금 액	비고
		오전	40,000	
해봐요 미조	다목적홀	오후	40,000	오전 09:00~13:00
		종일	80,000	오후 14:00~18:00
		오전	40,000	종일 09:00~18:00 * 준비·철수기간의
미조 홀 2	전시실	오후	40,000	사용은 무료로 한다.
		종일	80,000	
오픈스튜디오	창작스튜디오	1개월	250,000	* 공공요금 포함

나. 대관(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	환불사유(환불 신청일)	환불기준	비고
	운영자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100퍼센트	
	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100퍼센트	
시 설 이용료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80퍼센트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70퍼센트	
	사용 개시 1일 전까지	50퍼센트	

[별지 제1호서식]

문화·관광 시설물 이용허가(변경) 신청서						
	주 소				전화 번호	
1.이용자	법 인 명 (단체 또는 개인)		성 명 (대표자)		생년 월일	
2. 행사명 (이용목	적)					
3. 이용기	간	년 년		시 ¹ 시 7		
4. 이용대 인원	상 및				명	
5. 이용시	설명					
6. 비고		붙임:	행사계획서			
행정정보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일):	(서명 또	는 날인)
남해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노도창작실 이용허가(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시청이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이용	-목적						
이용	-기간	년	월	일부터			
10	/ L	년	월	일까지	(일간)		
刊	고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남해군수 귀하

- ※ 첨부서류(이용허가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미 첨부)
 - 1. 대상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구체적인 작품 구상과 집필 목적을 포함하는 창작활동 계획서 1부. (A4용지, 글자크기 14포인트 1000자 이상)
 - 3. 확약서 1부.
 -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 신청 자격

- 전문 문학 매체 또는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최근 3년 이내 작품 발간 실적이 있 는 문인
- 김만중문학상 수상자로서 최근 3년 이내 작품 발간 실적이 있는 문인
- ※ 연간 2회 이상 또는 180일 이상 사용 불가
- 대상 분야 : 번역·시·시조·소설·산문·아동문학·평론·희곡 등 문학 전 장르

확 약 서

본인은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노도창작실 이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및 허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 1. 이용기간의 2/3 이상을 실제 기거하며 창작활동을 한다.
- 2. 이용기간에 창작한 작품의 발표 혹은 출간 시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노도창작실에서 창작한 작품임을 명시하겠음
- 3. 남해군에서 본인의 사진 및 프로필을 남해군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에 공개 및 이용함을 허용한다.
- 4. 창작공간 내 다른 작가의 창작을 방해하지 않도록 타인을 배려하며, 입주작가 프로그램 운영시 적극 참여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문화·관광 시설물 이용(변경)허가서								
허가번호	허가번호 : 제 호							
1 0 0 7	주 소	전화 번호						
1. 이용자	법 인 명(단체 또는 개인)	성 명 (대표자) 생년 월일						
2. 행사명	(이용목적)							
3. 이용기간 년 월 일 시 부 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이용대	4. 이용대상 및 인원 명							
5. 이용 ㅅ	5. 이용 시설명							
6. 이용자	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6. 이용자 준수사항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별지 제4호서식]

노도창작실 이용(변경)허가서

노노장삭실 이용(면정)허가서							
허가번호	허가번호 : 제 호						
1 0 9 7	주소	전화 번호					
1. 이용자	성명	생년 월일					
2. 이용목적	}						
3. 이용기긴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이용 시	설명						
5. 이용자 즉	준수사항	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소음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별지 제5호서식]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 신청서

법인명 (단체 또는 개	인)	성 명 (대표자)				
법인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관광해설 능 력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남해군이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위탁(운영)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문화·관광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정보 수집	- 주소, 성명, 법인명, 법역	·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이용에 관한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동의사항	- 위탁관리 및 운영 종료	. – –				
	□ 다음 서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 법인(단체)등기부 등본					
□ 귀하께서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탁 운영 허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관리위탁 및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소재지):

법인(단체 또는 개인)명: (서명 또는 인)

붙임 :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 계획서 1부.

남 해 군 수 귀하

[붙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 계획서

- 운영방침
 - •
 - •
- 세부추진계획
- 1.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 •
 - •
- 2. 시설물 관광해설 및 홍보계획
 - •
 - •
- 3. 시설물 에너지사용 계획
 - •
 - •
- 4. 운영 재원 확보사항(통장사본 등)
 - •
 - •

관리운영자 :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남해군 조례 제2563호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9월 2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시숲" 이란 남해군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 2. "생활숲" 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 3. "가로수" 란「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도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 제3조(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남해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조성·관리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 (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 2. 가로수의 옮겨심기

- 3. 가로수의 제거
- 4. 가로수의 가지치기
- 5. 가로수의 바꿔심기
- 6. 가로수의 메워심기
-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수 제거를 승인할 수 있다.
- 1.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경우
- 2. 이식함으로써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이식·보식하기에 시기가 맞지 아니한 경우
- 제5조(비용 부담 등)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은 원인자가 부담하되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시행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원인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경우 군수는 원인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행 전에 군수의 의견을 들어 시공하고, 사업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3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3. 추정금액 10억 원 이상 도시숲 등 조성 사업 또는 4킬로미터 이상 신규 가로수길 조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위원장은 도시숲 등 업무 담당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등 업무 부서장과 도시계획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군수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2. 지역의 주민대표
 -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심사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감염병 집단발병 등으로 인해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 4.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1. 도시숲 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2. 도시숲 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 3.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가 필요한 행위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가산 금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처분·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남해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해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남해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해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フ	로수 사	업 (식재 • 이	식 • 7	削거・ブ	トスコフ] 등	등) 승인	. 신청사	1		
신청인	성 명	(명칭)		(남 자	생년월일 は인・사' 등록번호	: 업 5_)					성별	
	주	소					연	락처				
사업	위	치										
사업 대상	수	종		규격	수 고 흉고직?		,	근원직기	경:	수	량	꼬
사		유									·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E	터					
'	μ ' 			년	월	일까기	지	(일간)			

남해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해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1. 훼손하거나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 수목 손괴 등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 실작업비
 - 나. 부대시설(조경시설) 손괴 등
 -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2. 장애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방치·점유한 경우
 - ⇒ 해당 물건(장애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철거비
- 3.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가 필요한 경우
 - ⇒ 조성·관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가. 재료비 중 수목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 적용
 - 정보지에 없는 중간 규격은 상·하 평균 가격으로 산정
 - 정보지의 최대 규격 이상은 시중 가격 적용
 - 나. 제경비
 - 일반관리비 : 재료비 및 노무비 합계액의 100분의 6을 곱한 금액
 - 이 윤 : 노무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대체 수목 식 재를 위한 도급공사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 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표 2]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 1. 훼손하거나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 수목 손괴 등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 실작업비
 - 나. 부대시설(조경시설) 손괴 등
 -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2. 장애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방치·점유한 경우
 - ⇒ 해당 물건(장애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철거비
- 3.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가 필요한 경우
 - ⇒ 조성·관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가. 재료비 중 수목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 적용
 - 정보지에 없는 중간 규격은 상·하 평균 가격으로 산정
 - 정보지의 최대 규격 이상은 시중 가격 적용
 - 나. 제경비
 - 일반관리비 : 재료비 및 노무비 합계액의 100분의 6을 곱한 금액
 - 이 윤 : 노무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대체 수목 식 재를 위한 도급공사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 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남해군 조례 제2564호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9월 2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남해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원 명칭과 위치) 남해군 군립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관리사무소)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군립공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 2. 공원계획의 결정 · 변경에 관한 사항
 -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공원의 보전 ·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 업무 담당 소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1. 당연직 위원: 도시계획 업무 부서장, 환경 업무 부서장
 -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 나.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 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⑤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⑥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제착·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특별위원이나 위원·특별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 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일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 제12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 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전에 징수한다.
- 제13조(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해 공원을 점용하는 경우
 - 2. 재해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원상회복) ① 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나 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 둔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④ 군수는 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원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칭	위치
남해군 호구산군립공원	남해군 이동면 다정·석평·용소리, 남면 당항리 일원

[별표 2]

점용료 요율기준(제11조 관련)

점용의 종류	기 준 요 율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이축이나 물건 쌓기 및 계류	이상
2. 토지의 개간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
3.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법 제37조제3항에 의한 예상징수금액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남해군 조례 제2565호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9월 2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79호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남산근린공원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남해군 남산근린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43번길 20-5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원시설" 이란 공원 안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어울마당, 잔디마당, 산책로, 화장실, 스케이트장 등을 말한다.
 - 2. "부대시설" 이란 공원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 3. "공원시설의 이용" 이란 공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이용자" 란 공원시설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이용료" 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6. "어린이" 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7.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공원시설의 이용 및 관리)** ① 공원시설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상시 개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공원시설의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 2. 공원시설의 유·무상 이용의 범위 및 이용방법
 - 3. 군수는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
 - ③ 공원시설 중 스케이트장의 이용대상은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한다.
-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공원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위탁운영할 때에는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공원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 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 ③ 수탁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때
 -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8조(공원시설에 대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다고 확인된 사람
 - 2. 만취된 사람 및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
 -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 4. 공원시설물을 훼손했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5. 그 밖에 공원시설의 안전관리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9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청소년 어울마당, 어린이 놀이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 ② 스케이트장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일몰시(하절기 오후 6시, 동절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 제10조(이용료) ① 공원시설 중 스케이트장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케이트장의 이용료는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4.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녀
-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납부된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군의 귀책사유로 공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이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한다.
 - 2.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
 - 3. 그 밖의 반환의 요청은 기획재정부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제13조(변상책임)** 이용자가 공원시설과 부대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해 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스케이트장 이용료 징수기준

(1시간 기준)

구 분	사용요금	연 령	비고
어린이	1,000원	7세 이상 ~ 12세 이하	
청소년	2,000원	13세 이상 ~ 18세 이하	

고시

남해군 고시 제2021-14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정포천(지방하천)

2. 성 명 : 강태0

3. 주 소 : 경남 남해군 고현면 화방로

4. 점용목적 : 양어시설 부지의 우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 1111번지(1077-7번지 관련)

6. 점용면적 : 2.8 m²

7. 점용기간 : 2021. 9. 13. ~ 2025. 12. 31.

남해군 고시 제2021-14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서상천(지방하천)

2. 성 명: 박인0

3. 주 소 :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 00

4. 점용목적 : 오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연죽리 1396번지(1396-2번지 인근)

6. 점용면적 : 1 m²

7. 점용기간 : 2021. 9. 16. ~ 2025. 12. 31.

남해군 고시 제2021-150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6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50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П	\neg
덮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표지재질	철재	<u>추</u> 재	極재	쩓포	쩐	極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u>추</u>	应 재	应 재	極재	極재	应 자	철재	철재	極재	应 자	極재	極재	应 자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수 재기	남해읍 입현리 1179-1	남해읍 입현리 1170-4	남해읍 입현리 913-33	남면 홍현리 416-3	남면 홍현리 415-3	남면 홍현리 413-2	7-0/2 19 등 등 급	창선면 진동리 1208	창선면 진동리 1208	창선면 진동리 100	서면 대정리 691-5	서면 대정리 1115-4	서면 대정리 936-5	서면 대정리 937	남면 당항리 1410	남면 평산리 1433-2	남면 평산리 1424-5	설천면 문의리 441-10	설천면 문의리 437-1	설천면 문의리 413-2	남해읍 평리 1569	남해읍 평리 621	남해읍 평리 617	남면 당항리 산37-3	1-2661 16은 1	남면 당항리 84-1	삼동면 지족리 산114-2	삼동면 지족리 1224	삼동면 지족리 793-8	삼동면 영지리 산75-7	삼동면 영지리 2982	삼동면 영지리 2963-2	삼동면 영지리 2963-2	삼동면 영지리 2962-2	미조면 송정리 243-2	면 송정리	미조면 송정리 산93-7
설치일	2021.08.27	2021.08.27	2021.08.27	2021.08.30	2021.08.30	2021.08.30	2021.08.30	2021.08.30	2021.08.30	2021.08.30	2021.08.31	2021.08.31	2021.08.31	2021.08.31	2021.08.31	2021.08.31	2021.08.31	2021.09.02	20.60.1202	2021.09.02	2021.09.04	2021.09.04	2021.09.04	2021.09.06	2021.09.06	2021.09.06	2021.09.07	2021.09.07	2021.09.07	2021.09.07	2021.09.07	2021.09.07	2021.09.07	2021.09.07	2021.09.08	2021.09.08	2021.09.08 미조
크 씅	34° 49' 38.0204"	34° 49' 33.5799"	34° 49' 28.903"	34 45 07.5978	34 45 06.5795	34 45 05.1308	34 45 04.8490	34°50'23.4971"	34°50'24.5160"	34°50'26.1859"	34 48 56.4873	34 48 54.1164	34 48 51.9397	34 48 50.1339	34° 45' 41.783"	34° 45' 38.977"	34° 45' 34.3637"	34°55'50.2756"	34°55'51.5277"	34°55'51.2335"	34° 48' 56.2451"	34° 48' 57.3747"	34° 48' 59.5661"	34° 46' 54.463"	34° 46' 51.8605"	34° 46' 45.6391"	34°49'35.4644"	34°49'30.1836"	34°49'26.0689"	34°49'23.2675"	34°48'34.4573"	34°48'35.1303"	34°48'38.7637"	34°48'41.7321"	34° 44' 36.9833"	34° 44' 37.8213"	34° 44' 36.6517"
나	26.842 127° 54' 40.2157"	127° 54' 42.7214"	127° 54' 49.6161"	127° 54 12.8561	127° 54 14.6216	49.925 127° 54 16.3222	22.842 127° 54 22.2152	4.351 128°04'31.7989"	7.778 128°04'25.6902"	9.441 128°04'23.4348"	43.008 127 51 59.1519	127 51 42.4198	127 51 32.0373	27.076 127 51 35.6884	72.367 127° 50' 58.0167"	69.964 127° 50' 54.5972"	127° 50' 52.396"	127°54'35.1847"	127°54'37.6680"	127°54'41.5027"	73.871 127° 53' 28.5233"	78.946 127° 53' 31.3802"	127° 53' 31.776"	127° 53' 10.4192"	127° 53' 9.3048"	127° 53' 8.7441"	127°59'26.5794"	41.554 127°59'24.5231"	38.192 127°59'25.4799"	43.499 127°59'23.7496"	1.216 127°58'3.4613"	127°57'55.8415"	3.325 127°57'52.9204"	3.089 127°57'50.0968"	13.48 128° 02' 46.2628"	21.892 128° 02' 41.4411"	26.212 128° 02' 38.3043"
다 #	26.842	29.131	40.841	58.824	53.806	49.925	22.842	4.351	7.778	9.441	43.008	36.114	29.416 127	27.076	72.367	69.964	72.92	101.244	87.3	71.662	73.871	78.946	75.267	86.995	74.988	52.855	52.495	41.554	38.192	43.499	1.216	3.368	3.325	3.089	13.48	21.892	26.212
세계측지계	283354.825	283419.744	283596.269	282734.551	282779.739	282823.398	282973.365	298373.317	298217.766	298159.91	279272.913	278848.283	278584.977	278678.25	277769.884		277628.867	283122.8	283185.478	283282.886	281544.405	281616.7	281626.164	281117.41	281089.781	281077.218	290632.746	290582.096	290607.662		288538.636	288344.759	288269.435	288196.788	295803.057	295680.134	295600.713
세계를	248306.262	248169.995	248027.461	239966.33	239935.353	239891.098	239883.763	249856.621	249886.359	249937.209	246990.064	246913.339	246843.997	246789.141	240976.589	240889.384	240746.743	259777.101	259816.261	259808.079	247002,495	247037.953	247105.574	243245.45	243164.998	242973.147	248296.474	248133.219	248006.653	247919.886	246395.775	246414.651	246525.909	246616.698	239149.54	239174.087	239137.217
원 전	왕	중부	중부	중부	중부	중부	국	₩ W	於	於	중부	중부	중부	중부	중부	중부	농	농	국동	중부	중부	국동	중부	상	於	중부	중부	중부	중부	중부	농	중부	중부	중부	중부	胀	K(A)
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F 다 면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그
기준점명칭	10252	10253	10254	15123	15124	15125	15126	19296	19297	19298	16068	16069	16070	16071	15127	15128	15129	18128	18129	18130	10255	10256	10257	15130	15131	15132	13236	13237	13238	13239	13240	13241	13242	13243	14103	14104	14105
연된 기	_	2	3	4	5	9	7	8	6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56	27	28	59	30	31	32	33	34	35	36	37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철재	철재	철재	철재	ጬ	철재	철재						
		2021.09.09 서면 남상리 1151-1	2021.09.09 서면 남상리 1150-4	2021.09.09 서면 남상리 1152-3	2021.09.09 서면 남상리 1199-1	2021.09.09 서면 남상리 1227-6	2021.09.09 상주면 양아리 540	2021.09.09 상주면 양아리 538		2021.09.13 남면 선구리 55-1	2021.09.13 남면 선구리 55-1	2021.09.13 남면 선구리 55-1
34° 44' 35.2222"	34° 44' 37.2679"	34° 50' 55.0816"	34° 50' 53.4642"	34° 50' 51.15"	34° 50' 48.1164"	34° 50' 44.5722"	34° 43' 25.5684"	34° 43' 27.0917"	34° 43' 24.2519"	34° 43' 37.8344"	34° 43' 39.2101"	34° 43' 41.751"
37.773 128° 02' 32.9473"	53.815 128° 02' 31.4519"	56.678 127° 49' 8.5652"	58.826 127° 49' 9.1461"	63.693 127° 49' 8.9542"	70.031 127° 49' 10.3308"	70.264 127° 49' 10.0733"	56.605 127° 57' 44.7265"	39.976 127° 57' 42.3025"	48.164 127° 57" 43.0413"	44.623 127° 52' 36.3994"	46.385 127° 52' 34.4561"	43.462 127° 52' 29.5733"
295464.898	295426.205	274907.521	274922.685	274918.392	274954.131	274948.48	288153.627	288091.502	288111.136	280305.285	280255.473	280130.562
239091.748	239154.396	250608.384	250558.66	250487.303	250394.102	250284.828	236872.113	236918.467	236831.132	237178.38	237220.346	237297.565
胀	중투	사	왕	水	장	중부	胀	싸	중	胺	중투	ᄣ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14106	14107	16072	16073	16074	16075	16076	12057	12058	12059	5416	15133	15134
38	39	40	41	45	43	44	45	46	47	48	46	20